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2023.03.30 조례 제1448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204-11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2023.3.30.>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센터, 체육공원, 운동장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 광고·게시·전람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울주군민"이란 체육시설 사용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7]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개정 2012.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군민이 경기 최소인원의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행사 또는 군 관내 기업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개정 2012.9.27>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분기별·월별 주민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전국 단위 및 군수기 체육행사 계획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계획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④ 군수는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7 >
[제목개정 2012.9.27]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3.3.30.>

제7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 및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
2. 경기장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7, 2016.10.27, 2023.3.30.>

1.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사용시간	평 일	06:00 ~ 22:00
	토·일요일, 공휴일	09:00 ~ 18:00
휴 무 일		월요일,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2. 그 밖의 시설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사용시간	초기	05:00 ~ 09:00	06:00 ~ 09:00
	주간	09:00 ~ 19:00	09:00 ~ 18:00
	야간	19:00 ~ 23:00	18:00 ~ 23:00
휴 무 일		없 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27 >
[제목개정 2014.8.7]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관람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수입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8.7]

제11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9.27 >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

1. 삭제 <2016.10.27>
2. 삭제 <2016.10.27>
3. 삭제 <2016.10.27>
4. 삭제 <2016.10.27>
5. 삭제 <2016.10.27>
6. 삭제 <2016.10.27>
7. 삭제 <2016.10.27>

②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구장, 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주군민 50퍼센트 이상이 조기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3.30.>

③ 군수는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개정 2023.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7, 2014.8.7>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1.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연기 신청: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연기 신청: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다. 삭제 <2023.3.3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시설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5.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23.3.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월회원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 신청할 경우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반환

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2일전부터 1일전까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7. 이용자의 전출·질병·장애·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 <신설 2023.3.30.>

8.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울산광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비상대책 발령기간동안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때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 <신설 2023.3.30.>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제외하고 반환하며, 그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2016.10.27>

제14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 제외) 군수는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자가 2회 이상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허가 우선 순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9.27]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고이나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0.27>

제16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23.3.30.>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참가자, 취재기자 <개정 2023.3.30.>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1,000원

2. 13세 이하의 어린이 500원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27>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9.27>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1명

2. 당연직 관계공무원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중 2명

4. 체육관련 전문가 3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9.27., 2020.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전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제22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 확보·기술수준 및 전문성 업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2.9.27]

제24조(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9.2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 및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5 조례 제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 및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3.29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 및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9.27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7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2> (생략)

<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 ~ <91> (생략)

부칙<2023.3.3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평 일	토·일 공휴일	비고	
간절곶 스포츠파크	천연 구장	체육경기	200,000 (140,000)	300,000 (210,000)	1회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300,000 (210,000)	450,000 (315,000)	
	인조 구장	체육경기	45,000 (32,000)	54,000 (38,000)	
		체육경기외	54,000 (38,000)	70,000 (49,000)	
	풋살장		20,000 (14,000)	30,000 (21,000)	
화랑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삼북면민운동장	축구장	체육경기	45,000 (32,000)	54,000 (38,000)	
		체육경기외	54,000 (38,000)	70,000 (49,000)	
	풋살장		20,000 (14,000)	30,000 (21,000)	
온산운동장	축구장	체육경기	45,000 (32,000)	54,000 (38,000)	
		체육경기외	54,000 (38,000)	70,000 (49,000)	
	풋살장		20,000 (14,000)	30,000 (21,000)	
	족구장		10,000 (7,000)	12,000 (8,400)	
범서생활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웅촌운동장, 청량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축구장	체육경기	45,000 (32,000)	54,000 (38,000)	
		체육경기외	54,000 (38,000)	70,000 (49,000)	
	족구장		10,000 (7,000)	12,000 (8,400)	
작천정운동장	축구장	체육경기	45,000 (32,000)	54,000 (38,000)	
		체육경기외	54,000 (38,000)	70,000 (49,000)	
	족구장		10,000 (7,000)	12,000 (8,400)	
서생체육공원	축구장	체육경기	45,000	54,000	

			(16,000)	(19,000)			
		체육경기외	54,000 (19,000)	70,000 (24,500)			
		풋살장	20,000 (7,000)	30,000 (10,500)			
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체육관	체육경기	15,000	20,000			
		체육경기외	25,000	30,000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체육경기	15,000	20,000			
		체육경기외	25,000	30,000			
	수영장	일일 입장	성인	3,000	3,5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2,000	2,500		
		월 회원	강 습 반	성인	55,000	45,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45,000	35,000	
		자 유 반	성인	40,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30,000			
	스쿼시 장	일일회원		4,000	5,000	1회 2시간	
		월회원	강습반	70,000		주4회	
			자유반	50,000		1회 2시간	
	헬스장	월회원	자유반	25,000		1회 3시간	
	골프 연습장	월회원	강습반	125,000		주4회	
			자유반	80,000		1회 1시간	
생활체 육강습	월회원	강습반	55,000		주 2~4회		

1. 괄호안은 울주군민이 전체 사용자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과사용료: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청소년: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4.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은 시중요금의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별표 2】

부속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전기	라이트 (축구장)	1시간	25,000원
	라이트 (풋살, 족구장)	1시간	3,000원
	라이트 (체육관)	1시간	10,000원
	냉난방시설 (체육관)	1시간	10,000원
음향	음향설비	1일 1회	20,000원
집기	집기 사용료	1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자 및 의자는 조당 3,000원 ○ 그 외 경기용 비품은 20,000원 ○ 실내체육관은 무료
<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행사의 경우 부속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p>			

【별표 3】

사용료가 감면되는 대상과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감면되는 대상
100분의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주군민이 8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지역단위 화합·체육 관련 행사(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구장, 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는 제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3.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 출전선수의 훈련이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단 또는 선수가 14일 이내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분의 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5.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7.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20	울주군민이 체육시설내의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키시장,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사용할 경우
100분의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2.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